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0799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 특례제도 및 수상레저교육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운영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등록번호판의 재발급 절차,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장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34조제3항”을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부속실”을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공작물”을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40조제3항”을 “영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급수관”을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중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마감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 사.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랜치를 설치할 것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 것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times 0.5) \times 0.28\text{m}^2$$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cm
-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용 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문화·집회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0.45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1.29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무대		1.40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운동	운동시설		4.60
교육	도서관	서고	9.30
		열람실	4.60
	학교 및 학원	교실	1.90
보육	보호시설		3.30
의료	입원치료구역		22.3
	수면구역		11.1
교정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11.1
주거	호텔 등 숙박시설		18.6
	공동주택		18.6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9.30
판매	지하층 및 1층		2.80
	그 외의 층		5.60
	배송공간		27.9
저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산업	공장		9.30
	제조업 시설		18.6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용도	용도별 건축물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등 음식·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집회시설
운동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운동시설
교육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직업훈련소·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보육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의료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교정	교정 및 군사시설
주거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사무소·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기원·사진관·표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시설
판매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저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산업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시설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및 안 별표 1의2 신설)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의 절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며, 배연설비 및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함.

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3호)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함.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3조)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하고,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신설(안 제15조제7항 신설)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공동주택은 120센티미터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마.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완화(안 제24조제5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 고층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승강로·기계실의 구조와 전용 예비전원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①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